

## 미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

2014년 11월 현재

휴대품	통관 기준	비고
술	○ 150ml 이하의 주류 단, 21세 이상, 자가소비용 및 선물용에 한함	
담배	○ 켈런(Cigarette) 200개비와 엽켈런(Cigar) 100개비 ※ 단, 쿠바산 시가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	
향수	○ 150ml 이하의 향수	
면세한도금액 (일반면세기준)	○ 미국 방문자(비거주자) : US\$ 100까지 면세 (미국에서 72시간 이상 체재 요구) 환승객 : US\$ 200까지 면세 ○ 미국 거주자 : 외국체류기간, 방문국가(지역)에 따라 US\$ 200, 800, 1,600으로 차등 적용 · 빈번 여행자(US\$ 200) · 사모아, 괌,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(US\$ 1,600) · 기타 국가 여행자(US\$ 800)	
면세기준 초과 물품에 대한 과세	○ 면세초과 물품에 대해 US\$ 1,000까지 구입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3% 단일세율로 과세 ○ US\$ 1,000 초과 물품은 관세율표상 세율로 과세	
외국환신고	○ 출입국시 휴대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US\$ 10,000이상인 현금, 수표 등 통화수단은 신고필요	
애완동물	○ 고양이 : 통관시 질병감염 징후, 이와 벼룩이 없 어야 하며 광견병 접종증명(접종일, 유효기간, 수의사 서명)이 있어야 함 ○ 개 : 통관시 질병감염 징후가 없어야 하며 출발 30일 이전에 접종된 광견병 접종증명(접종일, 유효 기간, 의사 서명)이 있어야 함 ○ 새 : 현지 Animal Import Center에서 검역통과 시 반입 가능 ○ 기타 토끼, 흰족제비 및 햄스터 등도 양호한 건 강상태인 경우 반입 가능	

휴대품	통관기준	비고
의약품·약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마약 및 위험 약품 반입금지</li> <li>○ 식품의약품관리청(FDA)은 미국내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처방약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</li> <li>○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3개월 분량 이하의 미승인 처방약 반입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미국내에서 반입약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것</li> <li>b. 반입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</li> <li>c. 불합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</li> <li>d. 반입자가 서면으로 반입약품이 본인의 사용 목적임을 공언하고 반입자 치료를 담당할 미국면허의사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약품반입 등 문의 : FDA 수입관리정책과 (301-443-6553)</p>	
식품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국가, 시기, 장소에 따라 반입 유무결정(병충해 발생등 우려)</li> <li>○ 고기, 가축, 가금류와 그들의 생산품은 원산국의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됨</li> <li>○ 가공되거나 캔에 들은 야채, 캔에 들은 과일, 캔디, 볶은 커피, 제빵제품, 양념류, 식초, 오일, 차, 깐마늘, 버섯, 미역 등은 판매용이 아닌 자가 소비용에 한해 반입가능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반입금지식품이 적발된(미신고) 경우 10,000불 이하의 벌금/과태료 부과</p>	

<p>상표권 및 저작권 위반물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국 방문자는 미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대해 상표 종류별로 1개 품목만 반입이 가능하며 1개를 초과하는 물품은 압수 후 폐기 또는 처분됨</li> </ul>	
<p>기타 반입규제품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어류,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의 생산품은 금지, 허가, 승인 또는 검역대상에 해당</li> <li>○ 수렵동물, 동물사체, 가죽 등 반입금지</li> <li>○ 가죽, 가금류도 거의 대부분 반입금지</li> <li>○ 약물류, 무기류, 폭발물</li> <li>○ 세라믹 식기(중국, 멕시코, 홍콩, 인도산)는 납 성분 함유로 인해 반입보류될 수 있음</li> <li>○ 향쑥속(artemisia) 성분을 포함한 주류</li> <li>○ 개와 고양이 털을 사용한 물품</li> <li>○ 흡은 수입허가증이 있어야 반입 가능</li> </ul>	